

대전지방법원 2023. 3. 9 선고 2022가단7942 판결 [연대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4. 4. 24 선고 2023나207436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3. 3. 9 선고 2022가단7942 판결

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

담당변호사 이경준

변론종결 2022. 12. 15.

판결선고 2023. 3. 9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4,150,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8.부터 2022. 11. 2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(主文)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(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)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외상 대금 채권 83,029,614원이 있던 차에 2015. 7. 2. 위 회사와 약정하기를 ‘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2015. 7. 31.과 같은 해 8. 31.에 각 2,000만 원을 받고(제1~2회) 2015. 9. 30.부터 2017. 6. 30.까지 22회(제3~24회)에 걸쳐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받는 것’으로 하고(합계 8,400만 원), 피고는 위 회사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는 위 84,000,000원 중 28,879,548원 (= 2015. 8. 28. 5,000,000원 + 같은 해 11. 30. 11,365,970원 + 같은 해 12. 29. 12,513,578원)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. 이를 원본에 총당하면 55,120,452원과 이에 대한 2015. 12. 30.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데,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일부청구한다(2019. 3. 19.부터 2022. 6. 15.까지의 기간에 피고로부터 수령했다고 자인하는 총 1,700,000원을 고려하더라도 일부청구이다).

피고의 항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. 주채무자인 위 회사의 채무가 약정최종변제기 2017. 6. 30.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이 지났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그러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한편, 피고가 위 3년 이내인 2019. 3. 19. 등에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바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

이로써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,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이 타당하다.

피고는,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가 시효중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채무자인 위 회사의 채무는 계속 시효가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가 스스로 금전을 지급하여(적극적 행위) 일부 변제를 한 사안이라는 점, 피고가 주채무자 주)C 회사와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, 이는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로써 일부 변제금 지급을 한 것으로 볼 측면도 없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.

그렇다면 결론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의 연대보증채무 54,150,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8.부터 2022. 11. 2.(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)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.

판사 오현석